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 11. 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5에 따라 우리대학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 의결한다.
1.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1. 예산담당 부서(팀)장, 결산담당 부서장, 기금운용을 담당 하는 직원
2.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2인 이내의 위원
3.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 각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 1인
③ 제2항 2호는 교직원, 학생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.
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② 위원장과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, 또는 위원 1/3이상의 소집요구 가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독립성)
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제7조(비밀유지 등)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투자정보, 기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관계 부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록)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비)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기타)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